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6. 24.(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표철수 부위원장

허욱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님,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혜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혜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자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37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20-38-168)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2쪽입니다. 의결주문은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방송공사 KBS제1광주UHDTV방송국 등 총 22개 방송사업자 16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5월 10일에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재허가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22개사 163개 방송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심사기본방향입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증가로 인해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허가 심사 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국민의 질의사항을 방송사 대표 등에게 직접 질의하고, 응답한 내용을 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2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심사 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업”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하고 배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부심사 기준 등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허가 여부 등의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7월~11월까지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심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12월 사이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해서 12월에 재허가 의결 및 심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올해 12월 31일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그리고 16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하는 안건입니다. 지상파방송사는 허가를 받아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업자보다 특히 더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의 가치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에는 중앙 지상파 4개사를 포함해서 4개사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방송산업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사업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각 방송사들의 공적책무를 실현할 만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또 코로나19로 가중된 지상파방송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만한 그런 경영적 또 재정적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우선 이것은 안건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심사위원장은 이번에 외부 인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표철수 부위원장

- 그리고 심사 기본방향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점 심사항목에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상파는 국가 자산인 전파를 받아서 행하는 방송인만큼 공익적·공공적 책무가 종편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법정제재 건수가 KBS는 5건, MBC가 8건, SBS는 6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KBS가 6건, MBC가 5건, SBS는 9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종편의 경우에는 막말과 오보·편파방송과 관련된 법정제재 건수를 1년에 4건 이하로 조건이 부가된 바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 TV조선, 또 채널A 같은 재승인의 경우에 기존의 오보·막말·편파방송 항목 이외에 인권보호와 윤리성 항목이 추가가 되어서 법정제재 5건 이하로 조건이 부가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심의 항목 가운데 윤리성은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제재 가능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적책무가 상대적으로 더 큰 지상파 방송도 법정제재 건수에 대해서는 종편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이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지요?

○ 표철수 부위원장

- 예, 원안에 동의합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면 조건 부분은 오늘은 심사 기본 세부계획을 정하는 날이고, 조건 부분은 나중에 결국 심사위원회에서 건의가 되면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부여하느냐는 사업자 특성별로 그리고 지상파에 들어간 조건이 종편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종편에 들어간 조건이 지상파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특성이나 심지어 지역방송 특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늘 정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도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니까요.

○ 표철수 부위원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거듭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상파는 우리 공동체의 공유자산입니다. 공동체 공유자산을 활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공적책임 책무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정신에 맞춰서 보다 더 냉정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상파에 대해서 공정성·투명성 부분을 문제 삼는 일반 국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히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심사위원들 심사 과정에서 그런 우리의 정신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과거 종편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준, 재인가 기준과의 차별성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심사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상파 책무에 대한 정신, 책임감을 깊이 강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22개사 16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마련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5월 제21차 회의에서 의결했던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한 재허가 세부계획이므로 주요내용과 추진일정에 이견이 없으며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가 5기 위원회 때인 올 11월, 12월 중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미리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2017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때 KBS, MBC, SBS와 대전MBC 등 4개사 14개 방송국이 650점 미만을 받아서 '조건부 재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편성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직원 징계제도 개선, 외주제작 거래 관행의 개선,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 재난방송 강화 등의 재허가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실적과 사업 계획서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KBS광주방송국을 비롯해 5개 지역 UHD 방송과 7개 지역 MBC 그리고 대전방송을 비롯한 6개 지역방송 등 모두 18개 지역의 지상파 UHD 방송 재허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지상파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 때와 달리 제작 여건과 시장 상황의 변화로 투자 및 제작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작년 말에 새로운 UHD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전까지 UHD 의무편성비율을 20%로 유지할 것과 시·군 지역에 도입하기로 한 일정을 연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올 3월에 시작한 지상파UHD 활성화 추진단의 종합적인 정책 검토와 향후 추진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이에 기초해서 시·군지역 지상파 UHD 방송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교통방송 TBS의 경우에 작년 12월 우리 위원회 변경허가를 받아서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으로 범위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허가 때 이행실적을 심사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해 시민참여형 재정운용 심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번 재허가 때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KBS, MBC DMB를 비롯해 유원미디어 등 7개사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재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지상파DMB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사의 이동수신 매체로서의 정체성을 지님과 동시에 재난매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고수익이 없고 채널 임대수익 또한 줄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 재허가 때 사업의 단순 유지에서 벗어나 서비스 개발과 투자, 전용콘텐츠의 제작 및 확대 등의 노력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 11월 심사 이전에 UHD 모바일 방송과 지상파DMB의 정책 상충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DMB에 대한 방송광고결합판매 적용 요구가 있는데 이는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부칙에 신규 매체에 대한 결합판매를 제외했기 때문에 DMB의 결합 판매를 적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최근 결합판매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청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제도 개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본안에 동의하신 의견이고 위원님 네 분께서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유의사항으로 지상파방송사의 공적책임 문제, UHD 정책 문제 그리고 DMB 정책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및 (주)마금에 대한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38-169)**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및 (주)마금에 대한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및 (주)마금에 대한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결주문은 (주)마금이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건은 종결한다. (주)마금에게 방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안)입니다. (주)마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구문화방송(주)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주식의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마금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주)의 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변경승인 신청 현황입니다. (주)마금은 대구문화방송(주)의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고 이에 대한 변경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19년 12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주)마금이 대구문화방송(주)의 주식을 30% 이상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후 1월 28일에 (주)마금이 방통위에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방통위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또는 거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마금은 지난 6월 4일에 '청문을 원하지 않음'을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고, 22일에는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 8인 전원은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마금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성이 낮고, 주식 취득 목적 및 취득자금 출처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후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주)마금이 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주)마금은 청문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주)마금이 변경승인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동 신청 건은 종결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마금은 여전히 대구문화방송(주)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경영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식 취득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주)마금의 법령 위반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마금이 대구문화방송(주)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정명령(안)은 '(주)마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구문화방송(주)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주식의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입니다. 6쪽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6월 중 (주)마금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통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대구MBC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위원장은 제가 맡았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주)마금의 대구MBC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 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 승인 거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마금은 청문을 돌연 포기했고, 이어서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마저 철회하였는데 이런 (주)마금의 무책임한 대응은 이들이 여전히 지상파방송 허가 승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또 지상파방송사를 책임질 만한 공적인 자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주)마금이 변경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이 사안이 다 끝난 것이 아닌데, 방통위 승인을 받지 못한 (주)마금은 현재 방송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관련된 규정을 엄연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에 근거해 주문에서와 같이 6개월 이내에 대구MBC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지 않도록 처분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올해 1월에 (주)마금이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했으나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들은 물론 우리 위원회 심의에서도 변경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의결주문 2가지 모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사업자가 여러 가지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무행정기관에 승인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청문회는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승인 신청을 철회하고, 이런 행태는 사업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 추가적인 시정명령도 내리지만 다른 벌칙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안에는 동의합니다만 일전에 저희들이 청취자들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재허가를 하고 나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우리 방송 안 한다" 이런 행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방통위로서는 모양이 아주 나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그런 자세로 방송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이 가능할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존경하는 김창룡 위원께서 심사위원장은 맡으셔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주도면밀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종전에도 이렇게 주식 취득한 이후에 변경승인 신청한 것이 일방적으로 거부 의견이 표명된 적이 있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없는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회로서는 아주 특이한 사례이고 이 과정 자체에서 지상파방송사의 공적책임의 중요성 그리고 그들을 수행해 나가는 지상파방송사 대주주의 역할이나 의미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심사위원 전원이 다 일치된 의견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의견을 내주셨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상파 방송사 대주주의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있다는 것들을 반증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존경하는 표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사안이 시작 단계부터 사실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굉장히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국가적인 행정기관이 동원되어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서 결과는 뻔한 예상이었는데 결과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이 처음 있는 사안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뭔가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이것이 첫 사례라서 그러는데 행정력이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낭비가 된 셈인데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일 아주 당연하게 거부되어야 할 사유가 명백하게 보일 경우에 이런 유사한 사례나 혹은 다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바로 위원회에 올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조심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거나 주식을 취득하고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과연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그런 것들을 제도에 반영하기는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그에 맞물려 위원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퍼블릭 서비스(public-service)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이, 사업자가 ‘나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냈을 때 우리가 판단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들었다고 해서, 나의 노동력과 나의 힘이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행정력의 낭비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기관 또 공무원의 입장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시 말씀드리면 제재 이런 것보다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0-38-170~178)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 ‘6. 시정조치(안)’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등을 위반한 9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배경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9개사이고, 유출신고한 사업자들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경과입니다. ’18년 7월부터 ’19년 11월까지 현장조사를 했고, ’19년 11월부터 ’20년 5월까지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사업자의 일반현황입니다. (주)가비아는 호스팅사업자이고,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맨담코리아는 화장품 판매회사이고, 메가스터디교육(주)은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스카우트는 취업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유)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사입니다. (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넷내셔널은 온라인교육 사업자입니다. (주)유한컴벌리는 건강·생활 용품 회사입니다. (주)테스트굿은 해외구매 대행업체입니다. <나> 개인정보 유출경로 및 내역입니다. (주)가비아는 해킹으로 개인정보 16만여건이 유출되었고,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해외업체의 설문조사페이지 해킹사고로 인해 국내 배달업체의 개인정보가 925건 유출되었습니다. (주)맨담코리아는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엔진에 2,500여건 노출되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주)은 해킹으로 인해 회원정보 570여만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스카우트 역시 해킹으로 인해 9,400여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유)는 서비스 관련 행사 안내메일을 보내면서 타인의 이메일 주소가 1,500여건 노출되었습니다. (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넷내셔널은 웹서버 취약점으로 인해 구글 검색창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주)유한컴벌리는 유·아동

용품 온라인서비스인 ‘맘큐’서비스에서 이용자 폭주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21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주)테스트굿은 해킹으로 인해 21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다> 위반사항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저장을 한 사업자가 2개사 그리고 유출 등의 통지신고 위반을 한 사업자가 4개사,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위반을 한 사업자가 중복 포함 모두 21개사인데, 접근 부여 원칙 위반, 접근권한 변경·말소 원칙 위반, 그리고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위반 등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을 위반한 사업자는 3개사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위반한 사업자는 중복 포함해서 모두 7개사입니다.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는 1개사, 그리고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사업자는 2개사입니다. 사업자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지연과 관련해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신고가 지연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신고시간 규정을 참작하여 신고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했습니다. 24시간 이내 신고 취지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신속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신고기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주)맨담코리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지연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통지·신고했다는 의견입니다. 이 역시 불수용했습니다. 적용 법령을 명확히 인지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주)은 여러 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접근통제 조치 의무 위반 관련해서 DB 접근제어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 1,000 건 이상 조회 시 알람을 설정하고 있고, 알람에 즉시 대응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또한, 누구나 특정 주소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조회 및 다운로드를 가능한 사실이 존재하나 외부망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여 유출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했습니다. ’19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불법적인 DB 접근에 대한 알람이 발생하였음에도 ’19년 6월 13일 이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침입에 대한 탐지·차단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또한 내부망에서 누구나 특정 주소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 작성규칙 위반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시 작성규칙과 관계없이 임의의 비밀번호로 작성 가능하지만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에는 작성규칙에 따라 생성된 비밀번호만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성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은 수용을 했습니다. 고시에서 정하는 작성규칙에 따라 생성된 비밀번호만 로그인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관련해서는 휴면회원 분리보관 시 아이디, 이름,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운영DB에 남겨 둔 것은 휴면회원이 CS센터로 연락할 경우, 아이디와 이름정보를 확인한 후 활동회원으로 복구하기 위한 것이며,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복원요청을 한 회원이 재 로그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위 의견도 수용했습니다. 아이디 등 최소한의 연결 값을 운영DB에 남겨 둔 것은 휴면회원임을 확인 후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지연과 관련해서 유출당사자의 2차 피해가 없었고, 11시간 지연 신고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신고 기한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위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주)테스트굿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미상의 해커가 이용자 74명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것 외에 총 21만여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 의견은 불수용했습니다. 미상의 해커가 사업자의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내역이 포함된 대용량 데이터파일과 회원정보 DB백업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 실행한 로그기록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회원 전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수용했습니다. 기타 4개 사업자는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6>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은 (주)가비아 등 9개사에 대해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과징금 부과 사업자 중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가비아, 메가스터디교육(주), (주)테스트굿 3개사에 대해 공표를 명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 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주)가비아 등 7개사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비아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각 산정하고,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제5조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을 1,000분의 21을 적용한 기준금액으로 각 산정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주)가비아 등 4개사는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가중 없이 각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주)가비아, (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넷내셔널, (주)테스트굿 3개사는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각 감경하며, 메가스터디교육(주)은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감경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가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메가스터디교육(주), (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넷내셔널, (주)테스트굿 3개사는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주)가비아의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징금 산출내역입니다. (주)가비아의 경우 4억 9,400만원, 메가스터디교육(주)은 9억 5,400만원, (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넷내셔널은 690만원, (주)테스트굿은 1,180만원입니다. 4개 사업자 총 14억 6,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맨담코리아 등 3개사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주)맨담코리아와 (주)스카우트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많지 않아 과징금 부과에 실효성이 없고, (주)유한컴벌리의 경우 이용자 폭주로 인한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개인정보 21건이 유출되었지만 피해사실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주)가비아 등 9개사가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태료 가중·감경 관련해서 위반행위가 2개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30%, 3개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가중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50%를 감경했습니다.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비아의 경우 가장 많은 과태료인데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발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와 고발기준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메가스터디교육(주)은 최근 3년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발기준 제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 이첩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 자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주)테스트굿은 조사 당시 탈퇴가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3,053건을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고발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하반기에 이행 점검을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신고한 (주)가비아 등 9개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하는 안건인데 비록 해당 사업자들이 자진신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인정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내용과 그 유출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중 메가스터디교육(주)의 경우는 수집한 570만건의 개인정보 대부분을 작년 6월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하였는데 특히 2018년도에 이미 동일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억 9,500만원을 부과받은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또 다시 해커에 의한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메가스터디교육(주)을 비롯한 9개사에 대한 과징금 총 14억 6,600만원과 함께 고발 수사기관 이첩 등 시정조치를 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규모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위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메가스터디교육(주)은 자진신고한 사업자가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신고 지연을 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신고지연에 해당한 것입니까?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20년 가까이 강조해 왔음에도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선 3가지를 묻고자 하는데 (유)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배달업체 '요기요'를 운영하는 곳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맞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18년 6월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안전 상정이 지금에야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저희가 통상 조사관별로 여러 개 사업자를 한꺼번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사업자가 있고, 또 나중에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자가 있는데 조사된 사업자들을 함께 안전에 상정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해외 해킹 때문에 늦어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맞습니다. 해외사업자가 해킹을 당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와 한국에 있는 사업자 간 서로 연락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두 번째로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유)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AWS의 한국지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허 육 상임위원

- 그러면 참조로 전체 수신메일을 발송해서 타인의 메일주소를 노출시킨 대상은 국내 기업들 명단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맞습니다. 서비스 관련 행사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유출이 된 것이고 국내 대상입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세 번째는 메가스터디교육(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570여만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령대별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개인정보 수집 내용에 성별과 생년월일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려면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구분해서 확인은 하지 않았고, 그것은 사업자의 서버를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하지 않고 총 개인정보 수집 건수, 유출 항목 등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필요하면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140여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예, 맞습니다. 2019년 교육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전국 고교생 숫자가 141만명입니다. 중학생 숫자가 129만명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 다 합쳐 봐야 270만명이라는 것입니다. 재수생이 약 13만명 안팎, 그러면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다 합쳐야 대학생 숫자가 270만명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570만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중·고등생과 대학생, 재수생 모두 합한 규모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휴먼회원 DB의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의 중등교육 사이트 엠베스트가 해킹이 되어서 개인정보 약 123만건이 대량으로 유출되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570만건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입니다. 메가스터디교육(주)은 종업원 1,500여명, 매출액 3,000억원이 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중·고등생 대상 온라인 수능 교육회사입니다. 이런 온라인 대기업이 정보보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에 어떤 참담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9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주)가비아 등 4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9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메가스터디교육(주)에 대한 고발 및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주)테스트굿에 대한 수사기관 이첩 등의 시정조치 모두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업자들을 보면 일반인들도 알만한 중견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폐가 스터디교육(주)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우 유명한 온라인 교육기관이지요. 지난번에도 이미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특히 2012년에 방통위가 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특히 (주)가비아 같은 기업은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해킹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유),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같은 경우 글로벌 유명업체들의 국내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늦게 한 점도 매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이 의결 원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런데 향후 사무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안들입니다.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제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유출 시 즉시 신고 이런 기본적인 규정들을 사업자들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계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업자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계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결론적으로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보완하는 것, 그리고 관리 부실에 대한 보완, 개인정보의 중요성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이런 안건이 들어올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더 면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출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 감경을 100분의 10 해 주고, 그다음 조사에 협력하면 또 100분의 10 해 주고 이것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2가지를 다하면 100분의 20을 추가 감경해 주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100분의 30 이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각각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엄격하게 처분하기 위해 합해서 20%를 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자진신고는 신고 자연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신고 자연의 경우 24시간을 지나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아까 위원장님께서 메가스터디교육(주) 지연 신고 부분 물어보신 것에 대해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주)은 신고를 제대로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지연 신고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형환 위원님께서 교육이나 계도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과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서 매년 스타트업과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에 대한 규정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70,000여개 사업자를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 이야기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리고 첨언하자면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들에 대한 서비스도 필요 하지만 국민들도 알아야지, 사실 제 주위에는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협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회 차원에서 자율 규제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자율규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아까 제가 질문을 메가스터디교육(주)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신고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인데 뒤에 보면 추가적 가중·감경에 메가스터디교육(주), (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주)테스트굿 다 20% 감경을 한 것은 자진신고한 것과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해서 20% 감경한 것으로 나오는데, (주)가비아는 10%만 감경하고, 위에 보면 여기는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해서 10% 감경했다면 (주)가비아는 자진신고가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주)가비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주)가비아는 자진신고가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견은 다를 일치한 것 같은데, 저희를 중앙부처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것은 그 쟁점과 관계없는데 의견을 수용하고, 불수용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어서 수용인지, 인용인지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주장을 인용한다’, ‘주장을 수용한다’ 어떤 것이 정확한 의미인지 불명확한데 차제에 이런 표현들을 우리 표현으로 고쳐서 ‘받아들임’, ‘받아들이지 않음’ 이런 정도로 고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검토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 최성호 사무처장

- 전체 안건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그런 표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회의 하면 문화부 장관이 항상 국어 표현에 대해 강조를 하시는데 정부위원회에서라도 협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민원신고된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0-38-179~187)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라> “민원신고된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 ‘6. 시정조치(안)’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1항 등을 위반한 11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민원신고된 4개 사업자, 그리고 기획조사 대상 4개 사업자, 언론보도된 2개 사업자 및 검찰통보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 11개사입니다. 민원신고된 4개 사업자는 유효기간제 위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 그리고 인터넷 전송구간이 암호화되지 않았다는 건,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미고지했다는 그런 민원신고로 들어온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조사 4개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들은 저희가 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온라인 개인정보 의무조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하고, 또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래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사업자 중에서 특히 이용자 수가 많은 사업자를 선별해서 4개 사업자를 조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에스피씨클라우드와 (주)씨디네트웍스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인지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미팩토리는 해킹으로

인한 검찰 통보 사건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18년 5월부터 '20년 5월까지 현장조사를 했고, '19년 11월부터 '20년 5월까지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일반현황입니다. (주)공부이엔씨는 교육컨설팅 회사입니다. (주)넥슨코리아는 게임 등 프로그램 개발사입니다. (주)미팩토리는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고, (주)비전클라우드는 인터넷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픈로쓰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씨디네트웍스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주)씨트립코리아는 항공사 고객 대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에스피씨클라우드는 해피카드 포인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엘리씨에듀넷은 인터넷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엠지글로벌아이엔씨는 화상중국어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제타 미디어는 B2B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는 2개사입니다. 먼저 (주)미팩토리는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24,000여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씨트립코리아는 담당자가 제3자에게 메일을 잘못 발송하여 개인정보 1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위반사항입니다. 접근권한 동의의무 위반 사업자는 1개사 그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사업자는 1개사, 위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사업자가 1개사, 영업의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가 1개사, 유출 등의 통지·신고 위반사업자가 1개사,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위반 사업자가 모두 5개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 위반사업자는 2개사, 암호화를 위반한 사업자는 7개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사업자가 1개사,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동의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어렵게 한 사업자가 1개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의견입니다. 먼저 (주)씨트립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지연과 관련해서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아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에스피씨클라우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동의위반과 관련해서 (주)인터파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사업자가 자사 회원에게 공연, 영화 등의 서비스제공 목적으로 (주)인터파크와 이벤트 대행 및 관련 사이트 운영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맡긴 것이므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사업자는 수탁사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허위 명함 사용이나 온라인 교육 이수자료에 소속사 허위 표기, 간판이 제거된 재위탁사 사무실로 현장실사 유도 등 수탁사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위탁사가 수탁사의 재위탁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탁사가 재위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위탁사가 수탁사의 재위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 시 고려했습니다. 그 외 (주)넥슨코리아, (주)미팩토리, 스픈로쓰, (주)씨디네트웍스 4개사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기타 5개사는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6> 시정조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은 (주)공부이엔씨 등 11개사에 대해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박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입니다. 과징금 부과 사업자 중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미팩토리에 대해 공표를 명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부과는 (주)에스피씨클라우드와 (주)미팩토리에 대해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 처리위탁을 한 (주)에스피씨클라우드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주)미팩토리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관련매출액입니다. (주)에스피씨클라우드의 관련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주)미팩토리의 관련 매출액은 (주)미팩토리에 흡수합병된 (주)오리진웨이의 사업개시부터 직전 사업연도인 '17년 말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주)에스피씨클라우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영리를 취할 목적이 없고 단순과실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해서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000분의 15를 적용하고, (주)미팩토리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000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각 산정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주)에스피씨클라우드 등 2개사는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추가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주)에스피씨클라우드는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주)미팩토리의 경우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산출내역은 <표>를 보시면 (주)에스피씨클라우드의 경우 감경을 거쳐 최종 과징금은 7,640만원입니다. (주)미팩토리의 경우 2,560만원입니다. 모두 합해서 1억 200만원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공부이엔씨 등 9개사가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미팩토리에 대해서는 (주)미팩토리에 흡수 합병된 (주)오리진웨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이므로 (주)미팩토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스플로쓰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조항이 없습니다. 박스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중·감경 관련해서 위반행위가 2개인 경우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경우 50%를 감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사 총 6,000만원입니다. 고발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 및 고발기준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없어 고발하지 않고자 합니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표>로 정리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에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하반기에 이행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을 여쭙기 전에 기획조사한 4개 사업자가 있는데 다 종업원이 1명, 2명, 2명, 2명, 1명 이것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자까지 모니터링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 매출도 그렇고….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19년에 웹사이트와 앱 각각 15,000개 정도 웹과 앱을 모니터링했었고, 전수는 아니지만 위낙 수많은 웹사이트와 앱이 있기 때문에 전수는 할 수 없지만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좀 더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숫자는 줄였습니다만 특히 큰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 미비하다, 그래서 언제까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개선계획서를 내서 개선이 되는데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명 정도, 매출액도 1년에 1억원, 또는 몇 천만원 이런 사업자의 경우에는 몇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할 수 없고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목적도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처벌은 가급적 자체를 했습니다만 이런 이용자가 많은 몇몇 사업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는 점을 참고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서 조사 대상 사업자가 됐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더 많은 사업자가 있지만 이용자 수가 많은 사업자 위주로만 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이 행정 실효성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 요구를 하더라도 인력이 없어서 내지는 역량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전반을 고려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했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정확한 이용자 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래도 이용자 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상대적으로….

○ 김창룡 상임위원

- 구체적인 기준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있다는 것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시정조치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 민원 신고가 접수되는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 소지가 있었던 11개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한 결과에 대한 사안입니다. 사무처 조사결과,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것은 2건에 불과 하지만 조사대상 기업 모두 하나 이상의 개인정보 관련 의무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통제,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암호화 기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들이 여전히 이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기술적 조치 등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보는 일부 기업들의 이러한 관점이 오늘 시정조치 계기로 바꿔 지기를 희망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이번 안전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것이지만 조사 대상에 차이가 있는 사안들입니다. 한두 가지 물으려고 하는데 (주)씨트립코리아 같은 경우 1건의 메일 오·발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지연 신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고객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뒤에 만약 24시간 내에 유출신고를 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주)씨트립코리아에서 메일을 오·발송했는데 1건이지 않습니까? 만약 고객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 난 다음 24시간 내에 유출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신고 지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된 그런 사안이라는 것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미신고입니까?

○ 허 육 상임위원

- 신고 지연입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24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두 곳은 빠졌습니다. (주)미팩토리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스플로쓰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접근권한을 요구할 때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시정명령은 가능한데 과태료 처분조항은 없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그 항목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항이 없다는 내용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이것은 차후에 보완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체 가운데는 앱사이트는 여기 한 군데 입니까? 나머지는 다 웹사이트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기획조사한 사업자 중에요?

○ 허 육 상임위원

- 기획조사한 4곳 가운데 앱사이트….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앱은 스플로쓰 하나입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2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9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저는 개인정보 법규 위반자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해당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굉장히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에스피씨클라우드는 포인트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주)에스피씨클라우드는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회사 맞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맞습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저도 그쪽 멤버인데 포인트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격히 해야 하고, 사업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행정조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요구해서 자꾸 시정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조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있는 이런 곳, 직원이 적어서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관한 것은 엄격히 계속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씨트립코리아 같은 경우 대표자 이름을 보니까 외국인 같습니다. 오이치통 씨라고 한국계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들은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아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것이 사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 잘 모른다, 많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의 유출의 중요성, 또 유출 케이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 규제도 중요하지만 역시 예방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행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처에서 이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모두 원안 동의하셔서 제가 더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주)씨트립코리아는 이메일 1건을 유출하고 유출신고 지연인데, 이것은 또 과태료 감경이 왜 없는 것입니까? 형평이나 사회 통념상 이것이 과연 맞나 싶습니다. 다른 곳은 과태료 금액 감경 쪽 적용되었는데 (주)씨트립코리아는 그렇지 않아도 1건 유출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1,000만원인데

왜….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통 감경 50%를 받는 경우가 시정을 완료했을 경우에 감경을 받는데 미비한 사항을 보완 했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신고 지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 완료와는 관계없어서 감경사항이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수한 것으면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형식적인 법 적용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게다가 과태료가 1,000만원입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과태료가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가장 많은 곳이 이메일 주소 1건 유출해서 유출신고를 지연했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업체와 형평성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신고라는 것이 어쨌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인데 유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 그러면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 아닙니까? 신고라는 형식적 절차가 남은 것인데 그것을….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좀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기 사업장 내에서 해킹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 1건이라도 유출이 일어나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24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이용자에게 모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의 유출신고만 들어오더라도 저희는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법 규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1,000건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전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건만 유출이 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저희는 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신고와 인지가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를 들어 (주)씨트립코리아의 경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혹은 유출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런 경우는 시정조치를 완료해서 감경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도,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뭔가 노력을 해야 과태료가 감경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정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신고 지연 같은 경우에는 시정이라는 것이 향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라거나 혹은 교육이 제대로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접수 기간 내 보완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신고는 그 방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이 형평성 있는 적용인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다들 원안에 동의하셨으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주)씨트립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지연 1건인데 과태료가 1,000만원, 이들 업체들 가운데 가장 세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른 차원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이 업체의 감경사유는 전혀 없다, 법 규정상으로 이상으로 이하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동안은 신고 지연 전에 대해서는 감경한 적은 없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위법은 맞고 감경도 안 된다, 그래서 고려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 허 육 상임위원

- 위원들이 협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감경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1건이고 유출신고가 지연되어서 통보가 됐고 사후에 자체적으로 만약 검증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사실상 시정조치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결국 적용 해석 문제인데, 예를 들면 신고가 늦었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관련된 엄격함이라는 부분들은 지키되,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하되 제가 보기엔 이것은 다른 수단이 없다면 저는 이것도 감경을 해도,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아예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싶어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행위를 했으면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간주 규정이라도 뒤서 여지를 열어 주어야지, 앞에 내용을 보니까 ‘이메일이 개인정보인지 몰랐다’, 변명일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1건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치할 방법도 없다, 이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문제제기하는 것이니까, 사무처에서 이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참고로 (주)씨트립코리아가 지연이 아니고 아예 유출사실을 인지했는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연이 아니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안 한 이유는 이메일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메일이 개인정보니까 뭔가 시정조치하라고 요구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고스란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경우만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는데 모든 경우에 이렇게 다 적용된다면 저는 불합리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자문관 의견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이태순 법률자문관

-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그 기준은 다시 한번 법을 봐서,

○ 한상혁 위원장

-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태순 법률자문관

- 항상 감경이나 가중할 때는 또 예외사유라는 것이 단서에 또 있으니까, 추가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인데 문제점이 아까 (주)미팩토리에 대해 과징금은 승계가 된다는 것이고, 과태료는 승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에….

○ 이태순 법률자문관

- 해석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승계된 법인과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과징금은 승계가 되고 과태료가 승계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법률자문관 의견에 일리는 있지만 두 번째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주)미팩토리의 (주)오리진웨이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부과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과가 됐으면 자산, 부채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당시에도 이미 부과가 안 된 것을 합병회사에 다시 한번 부과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해서 저는 그 판단은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 이태순 법률자문관

-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이 늦어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동일성이 법인이 잠탈하기 위해 법인을 바꾼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한 후에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징금도 똑같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은 해석을 통일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과징금의 금액에 비해 과태료의 금액이 이를 테면 1,000만원 내지는 감경사유까지 고려하면 과태료 회피의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기에는 과태료 추구의 실익이 적다고 개인적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 부분은 차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주)씨트립코리아에 대해서는 감경사유에 불과 1건이기 때문에 자연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메일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고, 이것을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있으면 저는 이 부분은 감경사유로 넣어도 차후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씨트립코리아의 경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동안 사례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건은 급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에서 제외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계속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주)미팩토리 건도 보니까 충분히 문제제기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데 행위를 할 때와 합병된 이후 법인이 동일성이 유지되고 바뀐 것인데 이때 한 행위에 대해 이때 처분을 못 하면 중간에 법인명만 바꾸면 처분을 못 한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법률해석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 나온 내용을 이 사안에 잘못 적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논의해 보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이 2건을 선불리 오늘 논의를 결정 내리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은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이라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전 법인하고 이후 법인이 여기에 형성된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다는 개념이지만 법인으로서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법인이 이 법인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상 여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주)씨트립코리아 같은 경우 1건이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5건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역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2건인 경우도 있고 3건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 한상혁 위원장

- 그런 문제도 있는데 문제는 신고를 안 한 경우에 본인이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신고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했구나’ 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대체적 수단으로 뭔가 수단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1건 같으면 여기에서 의결로 감경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일반화 된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원안 중 (주)미팩토리와 (주)씨트립코리아에 대한 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징금 부과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수정된 형태로 가결되었습니다.

7. 기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0분 폐회 】